

2019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19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1. 접수 개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접수기간) 2019.4.9.(화) ~ 4.15.(월) *심사결과는 2019.4.29.(월) 통보 예정
 -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http://loan.keiti.re.kr> *첨부1 참조) 또는 방문접수
 - ※ 방문접수의 경우 공인인증서 및 구비서류를 저장장치(USB, CD 등)에 담아서 내원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세부사항 첨부2 참조)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가능

2. 용자지원 및 조건

- (지원분야)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 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 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 (접수규모) 총 1,958억원

<2019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시설	운전	
50,000	50,000	9,800	30,000	26,000	30,000

○ 지원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1분기 기준 1.85%)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30억원
		해외시설설치자금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해외진출자금			5억원
유통판매자금	2억원				
환경개선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1.85%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50억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기준 1.85%)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25억원
		성장기반자금			
	운전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1.85%	5년거치 10년상환 (15년 이내)	30억원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 (지원방식) 간접대출방식 * 용자지원 심사 승인 후 용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 (우대조건) ①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증액(5억원 → 10억원) ②수출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해외진출자금 신청한도 증액(5억원 → 10억원)
- (지원금 제외)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3. 용자심사 주요사항



○ (심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과다한 용자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주요 심사내용

- (심사순위 결정) 재무안전성, 사업성장성 등 기업 평가점수 및 가산점 부여 합계 점수로 결정
- (서류심사) 신청자격,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내역 적정성 등 심사
- (환경관계법규위반)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여부
- (중복지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여부

4.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재무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매출, 자본금 등 매우 우량하여 정책지원 시급성이 낮은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첨부3 참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받은 사업자

※ 다만, 운전 분야 자금 신청 또는 시설분야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지원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지원 대상임.

-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 환경개선자금은 해당 없음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경우, 과거 용자지원받은 사업자로서 승인년도 기준으로 시설자금 분야 신청 시 1개년도, 운전자금 분야를 지원받은 후 다시 운전자금 분야 신청 시는 2개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연도별 재신청 가능 여부 분류

지원 구분	2019년도 시설자금	2019년도 운전자금
2017년도 이전 지원기업	신청 가능	신청 가능
2017년도 시설자금 지원기업	신청 가능	신청 가능
2017년도 운전자금 지원기업	신청 가능	신청 불가 *2020년 1분기부터 신청 가능
2018년도 시설자금 지원기업	신청 불가 *2020년 1분기부터 신청 가능	신청 불가 *2020년 1분기부터 신청 가능
2018년도 운전자금 지원기업	신청 불가 *2020년 1분기부터 신청 가능	신청 불가 *2021년 1분기부터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사업자, 다만 당해 용자 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용자신청 금액 부분은 용자 지원

※ 단, ‘환경개선자금’과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해당 없음

- 환경정책자금 용자운용요강 제18조에 따라 용자승인이 취소된 후 용자 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승인 취소된 용자원리금 회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환경정책자금 용자운용요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용자승인이 취소된 후 용자원리금 회수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5. 접수 문의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 02-2284-1731, 운전: 02-2284-1733)
- 환경개선자금(02-2284-1732, 02-2284-1741)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02-2284-1734, 운전: 02-2284-1735)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02-2284-1731)

- 첨부 1. 용자관리시스템 이용절차.
2. 환경정책자금 신청서류.
3. 한계기업(지원 대상 제외) 기준. 끝.

첨부1

용자관리시스템 이용절차

화면예시	절차
	<p>① 회원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입력
	<p>② 공인인증서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 등록, 미등록시 접속 불가
	<p>③ 자금별 신청 메뉴 클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등록 <p>④ 정보공개활용, 초과승인 동의</p> <p>⑤ 신청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 재무정보, 심사수위 정보, 용자신청서, 기업현황, 영업현황, 사업계획, 구비서류, 추가의견, 참업기업여부 등



⑥ 구비서류 등 첨부 및 상태 확인
- 자금별필수·선택서류 구분 및 등록



⑦ 초과승인 동의, 성실히행 준수
서약
⑧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첨부2

환경정책자금 신청서류

□ 공통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1	• 사업자등록증	
2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 필수
3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
4	• 재무제표	• 최근 2개년
5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최근년도
6	• 심사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증서, 특허증 등)	

□ 자금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 환경산업육성자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 환경산업체 입증자료(인증서, 등록증 등)	
시설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 건축허가서	• 공장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
	• 현장사진	
운전	• 녹색매장 인증서	• 유통판매자금 신청자의 경우

○ 환경개선자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 건축허가서	• 공장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
	• 현장사진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석면해체·제거등록증	
오염방지 시설	•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단, 신규설치 시 “설치 신고 민원 접수증”)	• 수질, 대기, 소음·진동, 석면 등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단, 신규설치 시 “적정 통보서”)	• 최종처리(소각장/매립장)시에는 종합재활용업허가증 제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폐기물감량화시설 신청 사업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 신규 창업 시 “적정 통보서”로 같음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 창업기업의 경우 설치완료후 제출가능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 창업기업의 경우 설치완료후 제출가능
	• 지방자치단체 대행계약서	•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시설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 건축허가서	• 공장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
	• 현장사진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증	• 지방자치단체 발급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중소기업확인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 현장사진	

첨부3**한계기업(지원 대상 제외) 기준**

※ 한계기업 기준은 환경개선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1. 상(上)한계기업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한계기준	산식
수익성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직전 매출 300억원 이상 지원제외	•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재무안정성	• 자산 70억원 이상	• 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
	• 부채비율 55%이하	•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기자본}}$

2. 하(下)한계기업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한계기준	산식
재무안정성	•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 50%이상	• 잠식률 = $\frac{(\text{자본금} - \text{자기자본})}{\text{자본금}} \times 100$
금융비용 부담정도	•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1 > \text{이자보상배율} = \frac{\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